

2025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8.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 안내 >

- ◆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을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본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경쟁유형, 직렬, 권역)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공단'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 채용인원 : 600명 (일반 505명, 장애 30명, 보훈 40명, 강원인재 25명)

(단위: 명)

구분	모집권역		계	행정		건강	요양	기술
				6급가	6급나	6급가	6급가	6급가
합계			600	237	40	94	223	6
일반	서울강원	소계	49	16	10	-	23	-
		서울	41	13	8	-	20	-
		강원	8	3	2	-	3	-

구분	모집권역		계	행정		건강	요양	기술
				6급가	6급나	6급가	6급가	6급가
일반	부산울산경남		86	32	6	14	34	-
	대구경북		66	21	4	12	29	-
	광주전라제주	소계	71	19	5	17	30	-
		광주·전남	38	10	3	6	19	-
		전북	23	6	1	8	8	-
		제주	10	3	1	3	3	-
	대전세종충청	소계	46	9	4	-	33	-
		대전·세종	2	-	-	-	2	-
		충북	14	2	2	-	10	-
		충남	30	7	2	-	21	-
	인천경기		179	86	11	37	45	-
	전국		8	2*	-	-	-	6**
장애	소계		30	30	-	-	-	-
	서울강원		8	8	-	-	-	-
	부산울산경남		4	4	-	-	-	-
	대구경북		3	3	-	-	-	-
	광주전라제주		4	4	-	-	-	-
	대전세종충청		3	3	-	-	-	-
	인천경기		8	8	-	-	-	-
보훈	소계		40	10	-	10	20	-
	서울강원		10	3	-	3	4	-
	부산울산경남		5	2	-	-	3	-
	대구경북		4	-	-	2	2	-
	광주전라제주		5	2	-	-	3	-
	대전세종충청		5	-	-	2	3	-
	인천경기		11	3	-	3	5	-
강원 인재	전국		25	12	-	4	9	-

* 행정직(6급가) 2명은 기록물관리 분야

** 기술직 6명은 전기 분야 3명, 건축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 근무조건

○ (신분) 정규직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처리 할 수 있음

○ (수습임용일) '25. 12. 8.(월) 예정

○ (보수) 우리 공단 제 규정에 따름(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복리후생) 정부지침 및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담당업무) 직무기술서(별첨 1) 참고
- (근무장소)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치함

구분	근무가능 지역
임용일로부터 최초 5년	‘모집권역 내’ 위치한 지사(출장소 포함) 순환근무
임용일로부터 5년 이후	‘모집권역 관할 지역본부 내’ 위치한 지사(출장소 포함) 순환근무

※ 제한경쟁 기술직·강원인재 합격자는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에 배치하며, 제한경쟁 행정직(기록물관리) 합격자는 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배치함

※ 본부 및 모집권역 관할 지역본부 발탁 시에는 상기 근무가능 지역과 무관하게 배치가능

2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 8. 18.\)](#) 기준

- 성별·연령·학력(행정직 6급나 제외)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임용일('25. 12. 8.) 기준 60세 이상(정년)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6급가 지원자 중 남성은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함(다만, 임용일('25. 12. 8.)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일('25. 12. 8.)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함
 - ※ 학업, 이직절차 등을 사유로 임용 유예 불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하려는 직렬·직급과 동일한 직렬·직급으로 우리 공단에서 근무 중인 사람(채용형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제외)

□ 경쟁유형별·직렬별 응시 자격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 8. 18.\)](#) 기준

경쟁유형		직렬	직급	응시 자격요건
공개 경쟁	일반	행정직	6급가	■ 해당사항 없음
		행정직 (기록물 관리)	6급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한 경쟁	일반	행정직	6급나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26.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 (지원불가)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건강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요양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기술직 (전기)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술직 (건축)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기술직 (기계)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보훈	행정직	6급가	■ 해당사항 없음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행정직	6급가	■ 해당사항 없음
		보훈		■ 해당사항 없음

경쟁유형		직렬	직급	응시 자격요건
제한 경쟁	보훈	건강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요양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강원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강원)인재 - 최종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졸업예정자는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행정직	6급가	■ 해당사항 없음
		건강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요양직	6급가	■ 아래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 응시 자격요건에 관한 안내사항

- ‘제한경쟁 강원인재’ 합격자가 이전지역(강원)인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6급나’ 합격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를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 기타 공통 응시 자격요건 및 경쟁유형별·직렬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퇴직 처리함

□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 8. 18.) 기준(모집권역 거주자는 '25. 7. 23. 기준)

※ 우대사항 가점은 만점의 15%까지만 부여함

구분	적 용 대 상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여야 하며,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와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보훈제한경쟁의 경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전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제한경쟁 장애에서는 별도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전 전형	만점의 5%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서류· 필기전형	만점의 3% (택 1)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가족구조가 한부모 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 등 있음 유의)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해당자 - 접수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구분	적 용 대 상	적용단계	가점
이전지역 (강원)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최종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졸업예정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이전지역(강원)이 포함된 모집권역 중 모집단위별(경쟁 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만 적용 ⇒(적용분야) 제한경쟁 장애 행정직 서울강원 - 제한경쟁 강원인재에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 (별지 2)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참고	전 전형	만점의 5%
모집권역 거주자	■ '25. 7. 23.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하려는 모집 권역으로 되어있는 사람 - 증빙서류 제출단계에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25. 7. 24. 부터 발급받은 초본 제출 필수 - 제한경쟁 행정직(기록물관리)·기술직·강원인재(전국)에서는 가점부여 등 우대하지 않음	서류전형	만점의 1%
우리공단 관련 경력자	■ '22. 1. 1. 이후 우리 공단 근무경력 365일 이상이거나, '22. 1. 1. 이후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 공단 고객 센터 중 한 기관의 근무경력 730일 이상인 사람 - 기간제 근로자 경력도 인정되며, 휴직기간은 제외함. 단,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가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도 제외함 - 2개 이상 기관의 경력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서류전형	만점의 3%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 '22. 1. 1. 이후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 60일 이상인 사람(근무기간에 따라 우대가점 차등 적용)	서류전형	만점의 1.5%~ 3%

구분	적용대상	적용단계	가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22. 1. 1. 이후 우리 공단 외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 90일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한함. 단, 근무 당시에 공공기관이었던 경우만 인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설기관, 직영병원, 자회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 - 2개 이상 기관의 경력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서류전형	만점의 1%
최우수·우수인턴	■ '23. 1. 1. 이후 우리 공단 최우수·우수인턴으로서 '우수인턴 인증서' 발급 가능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1%~2%

※ 모집권역 거주자, 우리공단 관련 경력자·청년인턴·최우수·우수인턴,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대가점은 공단 내부규정에 근거함

□ 우대 공인어학성적(영어)

구분	인정기준						적용단계
전 직렬 (공통)	아래 공인어학성적 중 하나(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 동일한 점수 부여)						서류전형
	TOEIC	NEW TEPS	TOEFL (IBT)	OPIC	TOEIC Speaking	G-TELP (Level 2)	
	800이상	309 이상	91 이상	IM3 이상	IM3 이상	76 이상	

- ◆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이며, 증빙서류제출 기간까지 성적표 발급이 가능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통합채용 포털에 등록한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인정)
- ◆ 확인이 불가능한 공인어학시험(국외시험, 특별시험 및 모의시험 등) 가(假) 성적은 불인정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청각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

구분	TOEIC	NEW TEPS	TOEFL (IBT)
환산기준	독해성적 × 200%	(문법 + 어휘 + 독해성적) × 167%	(독해 + 쓰기성적) × 200%

※ (직무 활용) 보험급여, 건강관리 등 의학전문 용어 사용 및 외국인 민원응대 등

□ 우대 면허(자격증)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 8. 18.\)](#) 기준

구분	면허(자격증)	적용단계
전 직렬 (공통)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sP) 이상, 빅데이터분석기사, SQL개발자(SQLD) 이상,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sP) 이상, 원가분석사, SAS Certified Advanced Programmer 또는 SAS Certified Base Programmer, 전산세무 1급, 기업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이상	서류전형
행정직	일반행정사,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법무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손해사정사(신체, 3종 대인, 차량, 3종 대물), 의지보조기기사, 의공기사, 보조공학사,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건강직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임상영양사, 의지보조기기사, 의공기사, 보조공학사,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요양직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각 2급 이상, 의지보조기기사, 의공기사, 보조공학사,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 접수마감일까지 최종합격하여 면허번호(또는 자격번호)가 부여된 면허(자격증)만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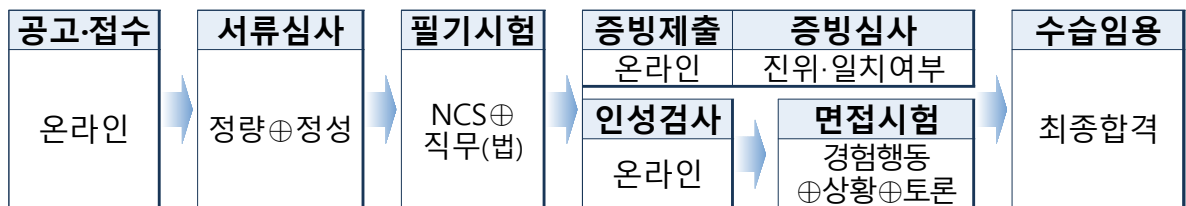
◆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함

◆ 직렬별 응시자격으로 기재한 면허(자격증)는 우대면허(자격)증에 중복 기재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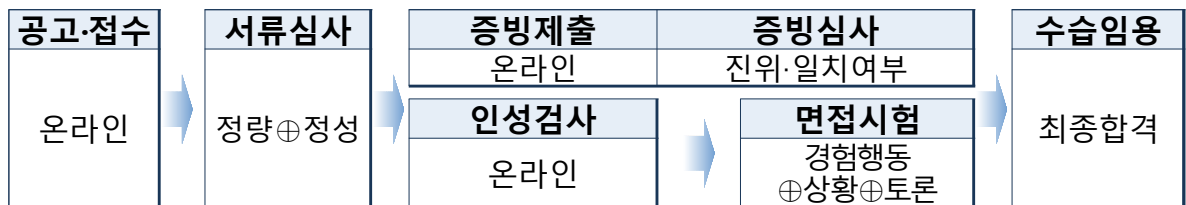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① 제한경쟁 장애·보훈 지원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



- ② 제한경쟁 장애·보훈 지원자 ... 필기시험 제외



※ 기한 내 인성검사 또는 증빙서류 제출 미 완료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①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5. 8. 4.(월) ~ 8. 18.(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채용사이트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 뉴스·소식 → 채용'에 게시 예정

- 온라인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5. 8. 18.(월) 17:00)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경쟁유형, 직렬, 권역)를 달리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의 성명과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한 경우 추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표절 등)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② 서류심사

- (심사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 (자격요건 확인) 모집단위별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정량·정성평가) 직무능력중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구분	평가내용
자격요건	▶ 면허(자격증) 등 응시 자격요건
평가항목	▶ 학교·직업교육, 경력, 어학, 면허(자격증),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 자기소개서 적/부 평가 포함(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표절 등)

※ 입사지원서 기재 불량자는 '자격미달',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 처리함

- (선발배수)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중, 최소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 기준 일반·강원인재 7배수 및 장애·보훈 5배수를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② 장애인→③ 정량평가 고득점자→④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그럼에도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25. 9. 11.(목) 예정

③ 필기시험

- (시험대상) 일반·강원인재 서류심사 합격자(장애·보훈 제외)
- (일자·장소) '25. 9. 20.(토), 서울소재 학교 예정(변경가능)
- (시험내용)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 직무시험(법률)

과목	직렬	시험내용
(제1과목) NCS 기반 직업기초 능력 (60분)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기술직	■ 직업기초능력 응용모듈 60문항 (의사소통 20문항, 수리 20문항, 문제해결 20문항)

◆ 직무시험 준비시간 (10분) ... 자리가동 불가

(제2과목) 직무시험 (법률) (20분)	행정직, 건강직, 기술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20문항 * 법률 제20505호('24. 10. 22. 일부개정)
	요양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외) 20문항 * 법률 제20587호('24. 12. 20. 일부개정)

- (합격자 결정) 과목당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소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의 2배수(단, 채용인원이 2명 이하인 모집단위는 3배수) 선발
* 필기점수, ** 필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장애인 → ③ 필기시험 원 점수 고득점자 → ④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그럼에도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25. 9. 26.(금) 예정

④ - ① 인성검사

... 기한 내 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 (검사대상) 일반·강원인재 필기시험 합격자, 장애·보훈 서류심사 합격자
- (검사일자) '25. 9. 26.(금) ~ 9. 30.(화) 17:00까지
- (검사방법)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

④ - ② 증빙서류 제출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 (제출대상) 일반·강원인재 필기시험 합격자, 장애·보훈 서류심사 합격자
- (제출기간) '25. 9. 26.(금) ~ 9. 30.(화) 17:00까지
- (제출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채용사이트에 제출

연번	증빙서류	제출대상	발급일자
1	주민등록초본	▶ 지원자 전원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 '남성'은 반드시 '병역사항'을 포함하고, 개명한 사람은 개명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초본에서 병역사항이 표시되지 않을 시 '병적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6급나 지원자 제외) - '모집권역 거주자' 우대사항 입력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25. 7. 24. ~ '25. 9. 30.
2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공인어학시험성적 입력자 - 어학성적 사전등록자는 정부24에서 '어학 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제한 없음
3	면허(자격증)	▶ 면허 또는 자격증 입력자 - 사이트 화면 캡처본, 면허(자격)번호 및 취득일 등이 표기되지 않는 시험합격확인서,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 기준 졸업(예정) 증명서	▶ 행정직 6급나 지원자 전원 ▶ 제한경쟁 강원인재 지원자 ▶ 이전지역(강원)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5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 행정직 6급나 지원자 전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신청 증명서에서 발급(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내역 없음'으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 (신청내역 있는 경우 제적증명서 함께 제출)	'25. 8. 4. ~ '25. 9. 30.
6	제적증명서	▶ 행정직 6급나 지원자 중 대학 중퇴자	

연번	증빙서류		제출대상	발급일자
7	학교 성적증명서		▶ 학교교육 입력자 ※ 접수 마감일('25.8.18.)까지 이수완료 건만 인정	제한 없음
8	직업교육 수료증		▶ 직업교육 입력자 - 제출된 서류로 NCS코드와 훈련과정명,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증으로 해당내용 확인 불가 시 고용24 (구 HRD-Net) 훈련과정정보 화면 캡처본, 고용24(구 HRD-Net)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직업훈련이력 확인원'으로 수료증 대체불가 ※ 접수 마감일('25.8.18.)까지 이수완료 건만 인정	
9	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턴수료증)		▶ 경력사항 입력자 (우리 공단 경력자 포함) - ①, ②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 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함 - 인턴경력 입력자가 인턴수료증 대신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할 때, 인턴 경력이라는 것이 서류로 입증 가능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0	우수인턴 인증서		▶ 최우수·우수인턴 해당자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이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출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급	'25. 8. 4. ~ '25. 9. 30.
12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 가능	'25. 8. 4. ~ '25. 9. 30.

연번	증빙서류		제출대상	발급일자
13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족 해당자 - ①, ②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기본증명서 ¹⁾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²⁾ 1)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기준 발급 2)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필요 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25. 8. 4. ~ '25. 9. 30.
	②	기본증명서 ¹⁾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²⁾		
1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 명의로 발급)	
1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16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17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동 자립수당) 통지서 ※ 위 서류발급이 불가할 시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해당자	'23. 1. 1. ~ '25. 9. 30. (단 지원자의 청각장애 등록일 이후)
18	의사진단서		▶ 청각장애인 기준 공인어학성적 입력자 -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면접점수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오기재: 단순 오기재는 감점 처리하여 합격자 선발 시 반영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및 입사지원서와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고,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면접시험

- (면접대상) 일반·강원인재 필기시험 합격자와 보훈·장애 서류심사 합격자 중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완료자
- (면접기간) '25. 10. 20.(월) ~ 11. 5.(수) 중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면접장소) 공단 본부 예정(변경가능)
- (면접방법) 경험행동면접(BEI) ⊕ 상황면접(SI) ⊕ 토론면접(GD)
 - 경험행동면접: 개인의 과거 경험 등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인성, 가치관, 태도 등 미래의 역량 수준을 예측
 - ※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관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맞춤형 면접 실시
 - 상황면접: 가상의 직무관련 상황을 제시, 그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 → 제시된 주제에 대해 지원자의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 등 평가
 - 토론면접: 지원자 간 협업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 개인의 직무역량 및 소통·협업능력 등 평가
- (조 편성) 다대다(多대多) 면접

⑥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위원 평균점수에 우대가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가점을 포함한 면접점수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과락) 처리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장애인 → ③ 필기시험 고득점자(원 점수) → ④ 서류심사 고득점자 → ⑤ 경험행동면접 고득점자 → ⑥ 토론면접 고득점자 → ⑦ 상황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25. 11. 25.(화) 예정

⑦ 수습임용

○ (임용후보자 등록) '25. 11. 25.(화) ~ 12. 1.(월) 10:00까지

○ (수습임용) '25. 12. 8.(월) 예정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및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전형별 일정** ... 각 전형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5. 8. 4.(월) ~ 8. 18.(월) 17:00까지	▶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9. 11.(목)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필기시험	'25. 9. 20.(토)	▶ 서울소재 학교에서 실시 예정
필기합격자 발표	'25. 9. 26.(금)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인성검사·증빙서류제출	'25. 9. 26.(금) ~ 9. 30.(화) 17:00까지	▶ 온라인 실시·제출
면접시험	'25. 10. 20.(월) ~ 11. 5.(수) 중 실시	▶ 공단 본부에서 실시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5. 11. 25.(화)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임용후보자 등록	'25. 11. 25.(화) ~ 12. 1.(월) 10:00까지	▶ 등록사이트 등 별도 안내
수습임용	'25. 12. 8.(월)	▶ 결격사유 등 확인

□ **예비합격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와 면접시험 과락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자를
제외한 면접 응시자 중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부여 및
개인별 통지(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소수점 올림)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발생한 임용포기자
또는 퇴사자**에 한하여 운영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영

** 이번 채용으로 임용된 사람 중 퇴사한 사람에 한함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전형별 합격자 선발 시 운영함

- (적용대상) 이전지역(강원)이 포함된 모집권역 중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상인 분야 ... 제한경쟁 강원인재는 전부 해당되므로 제외
- (운영방법) 각 전형단계별 이전 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별표 1의 채용비율(25년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단, 채용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합격 시 추가합격자는 합격선(컷트라인) -5점 이내인 사람(과락자 제외)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채용목표인원 계산 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올림한 인원 수 이상으로 함

4 추가 안내사항

- 합격자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 뉴스·소식 → 채용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별도 기준시점을 명시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 8. 18.)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단위 (경쟁유형·직렬·권역)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하며, 의도적으로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채용절차 진행과정 중 알게 된 면접 질문 등 관련 정보·자료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적발 시 임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의 근무일수 계산 시 공휴일을 제외하지 않은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25. 1. 1. ~ 1. 31.까지 근무 시 31일로 계산

- ☐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의 성명과 출생월일이 입사지원서(수험표)와 다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지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지 4] 참고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제출한 증빙서류가 지원서 기재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 우리 공단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심사위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본인 또는 타인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합격의 취소, 근로계약 해지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 응시인원 또는 합격인원이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채용인원은 이전지역(강원) 인재 채용목표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15일간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 이의신청'에서 접수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해당 채용시험과 무관한 단순 채용절차 등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임용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전 지원서 접수 사이트의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 **우리 공단 지원자는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우리 공단은 강원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 지역인재

□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㉓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㉔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이전 지역인재 해당여부 예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강원)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별지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항목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참고사항 안내 >

- ◆ 자기소개서는 아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서 접수시작 전 미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단, 접수사이트에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본인의 성명, 성별, 연령, 학교명, 회사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이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기소개서는 적/부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므로, 비속어 사용·무의미한 단어나열·표절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사람과 같이 협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하여 본인의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 Bytes 이내)

2.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느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 Bytes 이내)

3. 이전과 다른 접근을 통해 기존의 일과 관련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했던 경험에 대하여,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이유와 당시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 Bytes 이내)

4.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강약점을 강화 및 보완한 경험에 대하여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 Bytes 이내)

별지 4

장애인·중증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안내

◆ 편의제공 대상

- ☐ 우리 공단 신규직원 채용 응시자 중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편의제공 신청방법

- ☐ 장애인·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
 - ①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 *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② 필기시험·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③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

- ☐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등 징구예정)

-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로 장애유형·정도 등 지원자가 편의제공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할 시, 의사 진단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확인 후 발급)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전형단계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필기시험	지체장애	상지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하지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청각장애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시험	지체장애	상지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시각장애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면접과제지 축소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장애		▶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 속기사 문자통역 제공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기타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 예정